

- 제공일 : 2005. 11. 22.
- 제공자 : 농림부 농촌진흥과
- 과 장 : 조 원 량
- 주무관 : 정 문 기
- 전 화 : 500-1962

이 자료는 2005년 11월 2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리더를 선발하여 “농촌마을CEO”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.
- 농림부는 농촌지역개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수료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수료자를 획득 학점에 따라 초급리더, 중급리더, 핵심리더로 구분하여 육성한다. 또 핵심리더 중에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자를 ‘농촌마을CEO’로 인증하는 등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.

- 초급리더 :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지역개발 세부사업 운영에 필요한 초급수준의 역량을 갖춘 자 (5학점 이상)
- 중급리더 : 농촌지역개발 세부사업의 추진, 운영에 필요한 중급수준의 역량을 갖춘 자 (20학점 이상)
- 핵심리더 : 농촌지역개발 전반적인 분야의 기획, 추진,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 (60학점 이상)
- 농촌마을CEO : 핵심리더 중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지고 농촌의 변화·혁신을 주도하는 자

* 교육과정별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을 부여

- 농촌마을 CEO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농촌지역개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실제 농촌 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리더로서의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.
 - 농촌마을 CEO로 선정되려면 매년 7월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·군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군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거쳐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농림부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.
 - 농촌마을 CEO는 앞으로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교육강사,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되며, 농촌마을 CEO가 있는 지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대상지역 선정시 인센티브를 받는다.
- 농림부 관계자는 “내년부터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학점관리제와 농촌마을 CEO 제도가 시행되면, 농촌지역개발 교육과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 - 현재 전국 76개 권역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, 300여개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도농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.